



승객성명 Passenger Name	항공권번호 Ticket Number	예약번호 Booking Reference
WU/WEIWEIDAPHNE MS (KE51462831****)	1802326769464	17884072 (NS7IWW)

✈ 여정 Itinerary

출발 From	도착 To	편명 Flight
<p>LHR 런던(Heathrow) 25AUG2019(일) 19:35 (Local Time) Terminal No : 4</p>	<p>ICN 서울/인천(Incheon) 26AUG2019(월) 14:35 (Local Time) Terminal No : 2</p>	<p>KE 908 Operated by KE KOREAN AIR</p>

예약등급 Class : X (일반석)	예약상태 Status : OK (확약)	좌석번호 Seat number : 45D
운임 Fare Basis : XLSKY	수하물 Baggage : 1 Piece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 21FEB2019-21FEB2020
기종 Aircraft Type : Airbus A380-800	비행시간 Flight Duration : 11H 00M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 0

- 스케줄 및 기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교체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하신 좌석이 변경될 수 있으니 탑승수속 시 기종 및 좌석번호를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할인 또는 무임 항공권의 경우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률이 상이하거나 마일리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항공권 운임정보 Ticket Fare Information

운임 계산 Fare Calculation LON KE SEL0.00NUC0.00END ROE1.000000

운임 Fare Amount	USD 0.00 (Paid Amount KRW 0)	구매일자 Ticket Issue Date	21FEB2019
지불통화 Equivalent Fare Amount	KRW 0	구매장소 Ticket Issue Place	05999324
세금 Taxes	KRW 182,200	지불 수단 Form of Payment	FFRKE514628319218-M35000*A CC VI*****8768/****
항공사 부과 금액 Carrier Imposed Fees	KRW 161,900	연결 항공권 Companion Ticket No.	-
부가 서비스료 Service Fees	-	최초 발행 항공권 Original Ticket Number	-
합계 Total Amount	KRW 344,100 (Paid Amount KRW 344,100)	교환 항공권 Exchanged Ticket Number	-

* 세금 Taxes KRW 114000GB 68200UB

* 항공사 부과 금액 Carrier Imposed Fees KRW 1100YQ 160800YR

수하물 규정 안내 Baggage Information

대한항공의 국제선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안내

구분	개수	무게(개당)	사이즈 (가로+세로+높이)
일등석	3	32kg (70lb)	3면의 합이 158cm (62in) 이하
프레스티지석	2	32kg (70lb)	
일반석	1	23kg (50lb)	
	2 (* 미주 출도착)	23kg (50lb)	
	2 (* 단, 브라질 출도착)	32kg (70lb)	

국제선 유소아 무료 수하물 허용량

- 소아 : 성인과 동일+접이식 유모차 1개+카시트(또는 요람) 1개
- 유아 : 10kg(22lb) 이하이며 3면의 합이 115cm(45in) 이내인 수하물 1개+접이식 유모차 1개+카시트(또는 요람) 1개

* 개수/무게/사이즈 초과에 부과되는 요금은 수하물 각각에 부과됩니다.

* 항공사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및 초과 수하물 요금은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타 항공사와 연결 시 적용 기준에 따라 타 항공사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항공사 (공동운항편 포함)에서는 탑승수속 시 해당 항공사 정책에 따라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위탁 수하물에 대한 Handling Fee (수하물 취급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제한사항 안내 Ticket Restriction

항공권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런던 - 서울/인천 : 2020년 02월 21일
타항공사로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항공권은 타 항공사로 양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약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기간 중에는 보너스 항공권의 여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권 첫구간의 변경을 원하실 경우, 항공권을 재발행해야 합니다.
재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즌, 구간, 클래스가 변경되는 경우 마일리지가 추가로 공제되거나 환급 됩니다. 재발행 시 재발행 수수료 KRW 30,000이 부과되며, 변경 일자 기준으로 세금, 유류할증료가 재계산되어 환불 또는 추가 지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약부도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마일리지 적립 및 좌석 승급이 불가합니다. 성수기가 적용됩니다. 마일리지 좌석승급이 불가한 여정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예약부도 위약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 예약부도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재발행수수료 또는 환불위약금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지역별 적용 금액 [장거리 - 미주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 : KRW 120,000 [중거리 - 동남아 /서남아 /타슈켄트] : KRW 70,000 [단거리 -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몽골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 KRW 50,000 예약부도위약금은 출발지국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보너스 항공권 환불 시에는 예약부도위약금이 마일리지로 차감됩니다. (장거리 12,000마일, 중거리 7,000마일, 단거리 5,000마일)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너스 항공권 환불 시 환불 수수료가 공제됩니다. 출발 전 전체 미사용 항공권 환불의 경우 환불 접수 시점별 환불 수수료가 공제됩니다. [환불 접수일 기준 2019년 1월 21일 부] [유효기간 이내] 출발일 기준 환불 접수일 91일 이전 무료, 90일 이내 3,000마일 [유효기간 이후] 10,000마일 출발 후 부분 사용한 항공권 환불의 경우 환불 수수료가 공제 됩니다. 유효기간 이내 3,000마일, 유효기간 이후 10,000마일 환불은 항공권 명의인(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명의인 외 환불 시 필요서류는 대한항공 서비스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일주 보너스, 스카이티م 및 기타 제휴항공사 보너스의 경우 전체 미사용 시 환불 가능하며, 일부 사용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미사용 세금의 경우 해당 세금 규정에 별도의 제약이 없을 경우 요청 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매 항공권은 나의 예약 페이지에서 환불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p>지불수단변경? 구매 후 항공권의 결제 수단 변경은 불가합니다.</p>	<p>상용기업우대제도(CMBS) 를 이용한 경우? 상용기업우대제도(CMBS)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발급하신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라 공제 마일이 상이한 지역으로의 여정 변경 및 비수기에서 성수기로의 변경, 유효기간 연장, 마일리지 환급 등이 불가합니다. CMBS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홈페이지(www.koreanair.com)의 상용기업우대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스카이티م 및 기타 제휴항공사 보너스의 경우? 스카이티م 및 기타 제휴항공사 보너스의 경우 날짜, 구간 변경이 가능하며,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연장은 불가합니다.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마일리지가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p>	<p>세계일주 보너스의 경우? 세계일주 보너스의 경우 항공권 사용 개시 후 일부 여정 변경은 가능하나, 대한항공 발급지점에 문의 후 반드시 항공권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p>

기타 제한사항

-

상기 이외의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제한사항 및 기타 제한사항에 대한 문의는 항공권 구입처나 대한항공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Notice

- 본 e-티켓 확인증과 함께 제공된 법적 고지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티켓 확인증은 탑승수속시, 입출국/ 및 세관 통과시 제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 여행 기간 동안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티켓 확인증의 이름과 여권상의 이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항공사에 제공하는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운송 약관에 준하며, 필요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은 발행 항공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티켓 확인증은 e-티켓의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면에 불과하고 소지인에게 당해 운송 관련 어떠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e-티켓 확인증을 임의로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한항공 또는 정당한 e-티켓 소지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탑승수속 Check-In

- 대부분의 공항에서 탑승수속 마감시간은 해당 항공편 출발 40분 전(미주, 구주, 중동, 아프리카, 인도 출발편은 1시간 전)으로 되어있으니, 해당 출발 예정시각 최소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좌석을 배정받으신 고객께서는 항공기 출발 1시간 30분 전까지 (일등석 및 프레스티지석 이용 고객께서는 1시간 전까지) 탑승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각까지 탑승권으로 교환하지 못하신 고객은 사전 배정된 좌석 번호가 본인에게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 항공보안법 규정에 따라 탑승구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고 있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 국가 입국에 필요한 출입국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여권, 비자 등의 여행 서류는 승객 책임하에 확인 및 준비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여행 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경우 탑승수속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모든 손해 또는 비용은 여객운송약관에 의거 당사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공동운항 Codeshare Flight

- 운항 항공사에서 구입 시와 운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운항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운항편의 탑승 수속은 실제 운항하는 항공사의 터미널과 탑승수속 카운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운항 항공사 규정에 따라 탑승수속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델타(DELTA)가 운항사이고 브라질 출발 항공편의 경우, 반드시 국제선 출발 45분 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운항편 제반 서비스는 양사간 협의 하에 제공되나 기본적으로 운항사 기준을 따릅니다. 일부 운항사에서는 무료 사전좌석배정, 유료 선호좌석구매, 아기바구니, 특별기내식, 스카이프스 우수회원 혜택, 웹/모바일/키오스크 체크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운항 항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승객이 성인 보호자 없이 여행 시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제한품목 Not Allowed to Bring / Restricted

- 위험물의 위탁 또는 기내반입이 불가합니다.(미국 출 도착편의 경우 위반시 미국 연방법에 따라 징역 5년과 \$250,000 이상의 벌

- 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에는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액체 및 고체, 산화제, 독극물, 부식성 물질 및 방사성 물질이 포함됩니다. (예시: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폭죽, 최루가스, 산소통, 방사성 의약품) 위탁 수하물 내 적은 양의 약품, 화장품과 흡연용 물품의 휴대는 예외가 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물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또는 중요한 견본이나 서류, 의약품 및 전자제품 (노트북, 카메라, 핸드폰, MP3등)은 수하물로 위탁이 불가하오니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휴대가 불가하여 상기 물품을 위탁하시는 경우, 저희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책임 제한을 포함한 모든 수하물 관련사항은 당사 여객 운송약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서비스센터 Service Center

- 한국 : 1588-2001 / 02-2656-2001
- 일본 : (Toll-free) 0088-21-2001, (휴대전화 및 일부 IP 전화) 06-6264-3311
- 중국 : 40065-88888, (로밍서비스 이용 시) +86-532-8378-7024
- 미국 및 캐나다 : (Toll-free) 1-800-438-5000, (Text Telephone) 1-888-898-5525
- 유럽 : 유럽지역 Toll-free 번호는 [지점 보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에서의 연결 번호는 [지점 보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센터 및 현지지점의 근무시간에 따라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Toll-free로 표시된 전화번호는 전화요금을 대한항공에서 부담하는 무료전화입니다.
단, 이용하시는 통신사 요금정책 (로밍 서비스 등)과 호텔의 사정에 따라 전화요금이 청구되거나 연결이 제한될 수 있사오니 확인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대한항공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의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 착륙지가 출발국 이외의 타국 내의 1개 지점일 경우, 동 여객은 사망 또는 상해 및 수하물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통상적으로 제한하는 "바르샤바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항공권에 수록된 "국제선 여객에 대한 책임 제한에 관한 고지" 및 "수하물 배상책임 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조건

1.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권"이란 본 "여객 항공권 및 수하물표"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 적용되는 본 여정/그리고 영수표를 말하는 것으로 본 계약조건 및 상기 알림은 본 항공권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운송"이란 "수송"을 말하며, "운송인"이란 여객 또는 그의 수하물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운송하거나 또는 운송을 인수하거나 또는 당해 항공 운송에 수반되는 기타서비스를 행하는 모든 항공 운송인을 말합니다. "전자 항공권"이란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한 자에 의해 발행된 전자서식 및 탑승증표를 말합니다. "바르샤바협약"이란 1929년 10월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에 의한 협약" 또는 1955년 9월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중 적용되는 협약을 말하며, "몬트리올 협약"이란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을 말합니다.
2. 본 계약상의 운송이 바르샤바협약 또는 몬트리올협약에 정의된 국제선 운송일 경우, 그 운송은 당해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에 관한 규정 및 제한에 적용을 받습니다.
3. 각 운송인이 행하는 운송 및 기타서비스는 상기한 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 본 항공권에 기재된 규정, (II) 유효한 테리프, (III) 본 계약 조건에 일부로 되어있는 운송인의 운송약관 및 관련규정 (여객이 요청할 경우 운송인의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미국 또는 캐나다 내의 1개 지점과 미국 및 캐나다 이외의 타국내의 1개 지점간의 운송에 관하여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유효한 테리프가 적용됩니다.
4.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 상의 약호로 표기할 수 있으며, 정식 명칭 및 그 약호는 운송인의 테리프, 운송약관, 규정 또는 운항 시각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 상의 운송인의 약호명칭의 맞은편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공항을 말합니다. 여객과 운송인간의 합의된 도중 착륙지는 본 항공권 상에 명시된 도중 착륙지 또는 여객의 여정 상에 계획된 도중 체류지로서 운송인의 운항시각표에 표시된 지점을 말합니다. 본 계약 조건 하에서 2개 이상의 운송인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운송은 단일 운송으로 간주합니다.
5. 타 항공 운송인의 노선 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은 단지 그 항공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6. 운송인의 면책 또는 책임 제한에 관한 제반 규정은 운송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운송인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7.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표 소지자에게 인도합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국제선 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국내선 테리프 또는 운송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본 항공권, 운송인의 테리프, 운송약관 또는 관련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항공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계약 조건 상의 운송을 위한 운임은 운송개시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운임이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 운송인은 운송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9. 운송인은 여객 및 수하물을 적기에 운송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항 시각표 또는 기타에 표시된 시각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운송인은 부득이한 경우 통고 없이 운송인 또한 항공기를 타 운송인 또는 타 항공기로 대체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권상에 표시된 도중 착륙지를 변경하거나 경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운송인은 접속운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여객은 정부가 정한 여행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출입국 서류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운송인이 지정한 시각까지 또는 시각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국 수속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항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11. 운송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대표자는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포기할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수하물 배상 책임 한도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이 신고되고 그에 대한 추가 요금이 지불되지 않는 한, 수하물의 분실, 지연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 한도액은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국제선 여행이 해당되는 몬트리올 협약 적용 구간은 위탁수하물과 휴대수하물을 모두 포함하여 1인당 1,131 SDR입니다. 바르샤바 협약 적용 구간은 위탁수하물의 경우는 파운드당 미화 약 9.07불(킬로그램당 미화 20불), 휴대수하물의 경우는 여객 1인당 미화 400불입니다. 미국 내 지점 간 여행 시에는 연방정부 규정 상 항공사의 수하물 배상 책임 한도액은 여객 1인당 최소 미화 3,500불입니다. 어떤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는 상기 한도액은 초과하는 가격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는 파손 또는 부패되기 쉬운 물품이나 귀중품 또는 고가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정인 경우에는 귀중품 또는 고가품 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여객에 대한 책임 제한에 관한 고지

여객이 출발지국 이외의 국가 내에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 착륙지를 둔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당사 약관 또는 유효한 태리프 규정과 마찬가지로 출발지국 또는 목적지국 내의 구간을 포함한 전체 여행에 대하여 국제 조약 (바르샤바협약, 1999년 몬트리올협약 또는 기타 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해 조약의 책임에 대한 규정과 제한은 여객의 사망, 신체 상해, 위탁수하물의 멸실, 훼손 및 지연에 적용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상기 배상액에 추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국제조약 상의 운송인의 책임 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탑승 항공사 또는 보험회사의 직원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의 여객배상책임에 관한 특별 고지

대한항공에 의한 국제 운송의 경우, 대한항공 운송약관에 따라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시 바르샤바 협약에 규정된 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113,100 SDR을 초과하는 배상청구부분에 대해서는 동 협약 20조 (1)항의 항변권을 가집니다. EU 국가를 출발, 도착지로 하는 국제운송의 경우, 대한항공은 EU 법률에 따라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시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 합니다.

항공편의 초과 예약

항공사는 사전 예고 없이 확약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여객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해당 항공편 탑승을 원하는 여객이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과예약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예약이 확약된 항공편의 좌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좌석 제공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 불가

(미국에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여행을 개시하는 경우 본 고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공사의 초과예약으로 인한 좌석부족으로 예약이 확약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에 대한 보상규정이 일부 국가에서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부과 세금, 이용료 및 요금 안내

이 항공권 구입 가격에는 항공 운송에 대하여 각국 정부 당국이 부과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때에 따라 항공여행 경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금액은 항공운임에 포함되거나 따로 세금(TAX/andFEE/andCHARGE)란에 표기되기도 합니다. 발권 시 지불되지 않은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나중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예약 등급 준수

고객의 예약 등급은 항공권을 구입하실 때, 지불하신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구입하신 항공권의 "CLASS"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공권 구입 후 예약을 변경하실 때는 항공권에 표시된 예약 등급에 맞추어 예약을 하셔야 하며, 항공권의 예약 등급과 예약기록의 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차액을 지불하셔야 예약편에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의 취소

예약된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 사전에 예약을 취소해 주십시오. 사전 통보 없이 해당 예약편에 탑승하지 않으실 경우 계속편 또는 복편의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쿠폰 사용 순서

탑승용 쿠폰 또는 전자 쿠폰은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지부터 순서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항공권상에 명시된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항공권은 운송을 위해 접수될 수 없으며, 환불 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승객
Passenger

WU/WEIWEIDAPHNE MS

항공권 번호
Ticket No. 1802326769464

여정
Itinerary LHR-ICN

거래일자
Approval Date 21FEB2019

예약번호
Booking Reference 17884072

운임
Fare KRW 0

세금
Taxes KRW 182,200

항공사 부과 금액
Carrier Imposed Fees KRW 161,900

부가 서비스료
Service Fees KRW 0

합계
Total **KRW 344,100**

카드종류
Card Type VI

거래유형
Form of Payment Credit Card

카드번호
Card No. *****8768

유효기간
Expiry Date ** / **

할부기간
Installment 일시불

승인번호
Approval No. 52971495

가맹점명 Merchant Name : (주)대한항공(Korean Air) | 대표자 President : 우기훈 외 1명
가맹점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공항동) / Address : 260, Haneul-gil, Gangseo-gu, Seoul, Korea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 110-81-14794 | 웹사이트 http://www.koreanair.com

할부거래 계약서

제1조 (할부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의 연간요율은 [표1]과 같다.

제2조 (목적물의 인도등) 목적물의 인도는 할부거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을 인도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철회권) 회원은 할부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맹점으로 철회요청을 한 경우에 가맹점앞 철회요청 사실을 첨부한 서면을 신용제공자에게 제출 또는 발송함으로써 할부거래에 관한 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상품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할수 없는 경우와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상품의 멸실, 훼손되었을 경우 또는 20만원 이하의 상품인 경우에 철회 할 수 없다.

제4조 (회원의 항변권) 할부구매에 대한 분쟁에 있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신용 제공자에게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 단, 상행위 목적의 거래나 신용카드 본래의 용도 이외의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제5조 (회원의 기한기억 상실) 회원은 할부금액을 2회 이상 연속 연체하고, 연체 금액이 할부금의 1 /10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할부금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6조 (회원의 소유권 유보) 회원은 할부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이 유보될 수 있다.

제7조 (가맹점의 할부계약 해제) 가맹점이 회원의 할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할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회원에게 최고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또한, 소유권이 가맹점에 유보된 경우에 가맹점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특약사항) 신용카드업자 상호간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매출표 전면에 표시된 카드 발급사가 하단의 신용제공자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 발급사를 신용제공자로 본다.

